

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 -571

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 교육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·고시합니다.

2024년 11월 1일

국토교통부장관

해체공사 교육기관 지정

1. 목적

- 「건축물관리법」 제31조의2제2항 및 「건축물관리법 시행령」 제23조의3제4항에 따라 해체공사감리자 및 감리원에 대한 해체공사감리교육을 시행하는 교육기관을 지정·운영

2. 해체공사 교육기관

- 기관 명칭 : 영진건설기술교육원
 - 대표자 : 박승호
 - 소재지 : 대구광역시 동구 화랑로 525 별관 B2
 - 지정번호 : 제2024-1호

3. 지정기간

- 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